1. 개정이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의 근거를 명시하고, 취약노인 보호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에 따라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자의 건강상태가 일부 변화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자 함.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항목으로서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법인 대표자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6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의 선정·변경은 입소자의 복지 수준 및 시설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인바,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가 법 제33조의2 제6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무 신고사항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입소자의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가 확인 당시와 다르게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설치자는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거나 설치자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면 입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절차가 미비한 바, 이에 노인복지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입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안 제1조의3제3항3호)

나. 복지실시기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를 신설하고 인력기준 정비(안 제13조제3항 신설, 별표 1의3)

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에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로서 장기

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등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2호)

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 사항에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마. 노인복지주택의 변경신고 사항에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30조제4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소자의 의견 반영 절차 신설(안 제17조제2항,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재활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자”를 “자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자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17조제2항 중 “운영기준”을 “운영기준 및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장, 법인 대표자 또는 위탁·운영자(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다목2)(1)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노인”을 “노인”으로, 같은 (1) 중 “있을”을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로 하며, 같은 (1)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노인 관련 보

건·복지 기관·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지역센터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

2)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가목·나목·라목·마목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지역센터”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지역센터장”으로 본다.

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지역센터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의 수행상황, 라목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의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1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영위원회 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입소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가.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이하 이 호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입소자에 대하여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 설치・운영자는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을 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⑴ 위탁운영자가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⑵ 위탁운영자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을 한 사항과 다르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라. 설치・운영자는 위탁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목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을 철회해야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마. 설치・운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바목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⑴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⑵ 법인인 설치・운영자가 해산한 경우

⑶ 설치・운영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⑷ 그 밖에 파산・회생, 의식불명, 행방불명, 연락 두절 등 설치・운영자가 자신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라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⑴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

⑵ 나목에 따른 변경사항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⑶ 다목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업무

⑷ 라목에 따른 위탁 철회 등에 관한 업무

⑸ 그 밖에 설치·운영자의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1.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운영자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복지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운영자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탁기관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인권교육) ①·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생 략) ④·⑤ (생 략)	제1조의3(인권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② (생 략) <신 설>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재활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 자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자
<신 설>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등) ①----------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생 략)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영기준 및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 ~ ③ (생 략)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 ---------- ---------- ---------- ---------- ---------- 장, 법인 대표자 또는 위탁·운영자(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 ---------- -----.

1.·2. (생　략) ⑤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